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보도 심각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다소 발칙한 제목의 소설과 그 소설을 각색한 동명의 영화가 있다. 언론사 연예부에 입사한 신입기자의 좌충우돌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인데, 보고 있노라면 작금의 언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한 그런 작품이다.

작금의 언론 현실이란 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언론사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고자 열독율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공적관심사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한 내용들에 대한 기사와 보도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일부 종편과 연예전문매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한 피보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침해를 묵과하기에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물론 사생활이라고 해서 무작정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

기에, 미연방대법원 또한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해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인에 대한 공적 관심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인이라도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나, 사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공인의 사생활은 일반 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적 인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 그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내밀 영역에 해당하는 사생활 문제 등은 물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51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공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판례	
판례	
1	유명 방송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을 기사화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이혼사유와 배경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므로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 즉 공인이라도 개인으로서 가지는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언론 기관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음이 원칙” (서울지방법원 2002.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고 판시
2	“유명 여배우의 섹스 비디오 테이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이 사건을 다룬 기사들이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대리만족시키고 문제의 테이프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뿐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고 판시
3	남자 가수의 결혼과 관련한 소문을 스포츠 신문사가 기사화한 사건에 대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유명 연예인의 결혼 예정일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므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되며 우리 사회에서 연예문화의 현황과 그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일부인의 흥미 내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혼 상대방인 윤 모씨는 미스코리아 출전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혼 상대방인 윤 모씨라는 것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고 판시
4	“원고가 1978년 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고 판시
5	대기업 총수가 재혼을 위해 비공개로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기사화한 경우에 대해, 대기업 총수가 공적 인물이어서 그의 재혼이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끌만 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된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이 노출될 것은 자발적으로 감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배우자가 될 사람은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판결)고 판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줘야 할 사생활이 있고, (위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공인이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가 공인이 아닌 마당에야 그 관련자에 대한 기사나 보도는 관련자에게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초상권 침해가 되기 십상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유명한 타이어 제조 회사 Firestone사의 사장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적응하지 못해 이혼하게 되었는데도 타임지가 확대와 간통으로 이혼하게 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인 앨리스가 팜비치 지역에서 잘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는 피고 타임지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녀는 자신이 이혼을 위해 법정에서 억지로 갔을 뿐 이혼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공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과 ‘어떤 일에 참여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적 논쟁에 참여한 꼴이 된 것’은 다르다”고 판시하였다(Time, Inc. v. Firestone, 1976).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형으로 기존의 4가지 이외에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이라는 새로운 유형마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마당이고, 인터넷의 발달로 시, 공간의 제약 또한 사라져버린 지금에 사생활침해로 인한 피보도자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셈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4가지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①	사적영역의 침해로서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기타 개인영역에 들어가는 것 또는 사적 사항에 간섭하는 것
②	부당한 공개로서 사생활에 당혹감을 주는 사항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
③	왜곡된 묘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상을 제3자 또는 공중에 게 제시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
④	부당한 상업적 이용으로서 피해자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러나, 위자료가 서구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이고, 사생활침해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분이 미미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트래픽을 높여야 하는 언론과 좀 더 많은 user들이 유입되어야 하는 인터넷 생태계라는 현실에서 언론 스스로의 자정만을 기대해야 하는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K A A**